

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협약서

과 제 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

협약기간 : 2014년 3월 1일 ~ 2015년 2월 28일

협약 당사자

(갑)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

(을)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

2014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(갑)과 (을)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건강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임의 내용)

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'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' 사업 운영을 "을"에 책임하고, "을"은 본 사업의 운영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며, "갑"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.

제3조(기간)

본 협약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로 한다.

제4조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

- ① "갑"과 "을"은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은 계약연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통계집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"갑"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비 지급)

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금 사천칠백삼십사만팔천 원(W47,348,000원)으로, “갑”은 “을”이 사업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조기에 지급한다.

제6조(사업비관리 및 집행의무)

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교부받은 위탁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, 성실히 사업을 위하여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비 운영 및 정산)

본 협약 체결에 따라 사업비 운영 및 정산은 기 제출하여 승인받은 첨부 계획서에 의거, “을”이 위탁받은 지역의 사업비를 통합 운영 및 정산하기로 한다.

제8조(총괄공통경비의 지출)

“을”은 교부받은 위탁사업비 중 일부를 동 사업을 위해 책임대학교 담당교수와 연구원 교육 및 워크샵, 홍보콘텐츠 공동개발 및 제작, 사업지침서와 교육자료 공동제작 및 인쇄 등의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.

제9조(행위의 금지)

“을”은 “갑”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- ① 사업을 타인에게 재 책임하는 행위
- ② 사업이행 중 또는 이행 후에 사업내용 및 결과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
- ③ 본 사업의 결과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

제10조(준수사항)

“을”은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

- ① 사업수행 중 타 기관과 협의사항 발생시 “갑”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수행 중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서류를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1조(조사대상자 개인정보 보호)

“을”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수집되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지역사회건강조사(조사진실성 검증을 위한 전화 확인 점검)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유출해서는 안된다.
- ③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PC, 하드디스크, 이동식 디스크(CD, USB 등)등 저장장치에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.

제12조(보고)

“을”은 사업완료시 결과보고서(PDF)를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완료 후 1개월 이내(15.3.31이전) 결과보고서 인쇄물(건강통계집)을 제출한다.

제13조(협약의 해지)

- ① “갑”은 “을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
 2. “을”이 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“갑”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때
- ② 협약 해지 시 “을”은 지급 받은 사업비 전액을 “갑”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, “을”은 이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

③ “갑”과 “을”이 본 협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에 따른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4조(해석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시행하고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“갑”의 해석이 우선한다.

제15조(협약서 효력)

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6조(협약서 작성)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2 월 28 일

(갑)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

(을)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장

황 원 숙 (인)

김 영 진 (인)

